



제 429 회 국 회 (정 기 회)
제 3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48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3
2.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	14
※ 참고자료	
1. 교육청별 교육공무직원 중 학교급식 관련 직종명칭	20
2. 교육청별 교육공무직원 정원 등 관련 조례·규칙·규정 예시	21
3. 2025년 시·도별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예시	2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고민정의원 등 30인

나. 발 의 일 : 2025. 7. 8.

다. 회 부 일 : 2025.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종사자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종사자가 175명(2025.4 기준)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열악한 근로환경,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3조의2).
- 라.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안 제6조).
- 마.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및 조정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안 제3조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①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②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u>학생의</u>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u>“학교급식종사자”라 함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학교급식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u>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u>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 <u>영양교육</u> ----- ----- -----

현행	개정안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급식시설·설비)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영양교사, 학교급식종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시설·설비) ① ----- -----위생적·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하여--- ----- ----- -----. ② (현행과 같음)

□ 그러나, 학교급식 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³⁾,

학생의 식품 위생 및 안전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반면, 조리실무사⁴⁾ 등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 종전에 ‘영양교사(영양사)’와 ‘조리사’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던⁵⁾ 「학교급식법」에 ‘조리실무사’를 포함한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

②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시책 마련(안 제3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의2), 지자체장의 경비지원(안 제8조), 시설·설비 및 급식 전 과정에서 학교급식종사

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3) 「학교급식법」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4) 조리실무사는 시·도별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에 따라 해당 명칭을 다양하게 정하고 있어 조리실무사, 조리원 등 용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음. 구체적인 명칭은 「참고자료1: 교육청별 교육공무직원 중 학교급식 관련 직종명칭」 참조.

5)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안 제6조 및 제12조)를 규정하려는 것임.

□ 지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⁶⁾에 따라 학교급식종사자 또한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주(교육청 등)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근로조건 개선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부담하고⁷⁾,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⁸⁾하도록 하였음.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보급하여 급식실 환기설비의 설치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지침, 회의 등을 통해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조리방법 개선, 자동화 기구·기계 설치를 확대하고 있음.

6) 법률 제16272호, 2019.1.15. 전부개정

7)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8)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5년 8월 기준,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비율은 서울 12%, 경북 23% 수준에 그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전국 기준으로는 41%로 아직 시설·설비 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전국 시·도교육청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25.8. 기준) >

(단위: 교, %)

지역	대상 학교 수(A)	개선 학교 수(B)	개선 비율 (B/A×100)
서울	1,002	117	12%
부산	575	314	55%
대구	460	210	46%
인천	474	157	33%
광주	319	128	40%
대전	292	122	42%
울산	260	103	40%
세종	141	55	39%
경기	2,471	817	33%
강원	581	313	54%
충북	434	332	76%
충남	657	346	53%
전북	555	269	48%
전남	687	253	37%
경북	734	172	23%
경남	973	553	57%
제주	189	151	80%
합계	10,804	4,412	41%

자료: 교육부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인자에 조리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이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 실시 의무나 허용기준 준수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보건조치의 대상으로 가스, 흡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보건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여 일정한 강제성을 확보하고 있으나⁹⁾, 조리함을 별도로 위생물질로 분류하거나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 급식실에 대한 보건조치에 충분한 강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시·도교육청인 반면 학교 급식실의 운영,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지시 등은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청, 학교장, 영양교사·영양사 간에 안전관리 책임의 주체를 둘러싼 역할 갈등이 존재하는 등¹⁰⁾, 학교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급식실 산업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9)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0) 「경남교육청-영양교사 학교 급식실 안전보건 업무 두고 갈등(’23.6.13.)」, 뉴스1

「‘영양교사 직무’ 두고 불거진 교육단체 갈등(’25.6.5.)」, 대한급식신문

□ 따라서 현행 안전관리 체계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고,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이 타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으나 별도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율한 선례로, 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¹¹⁾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해 인권보호, 상담 및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규율하고 있고¹²⁾,

②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은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구체적인 작업환경관리조치 등에 대해 규율¹³⁾하여 이들에 대

11) 보건의료인력(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외에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20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각급부대의 장은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

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위를 넘어서 각 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학교급식법」의 본래 입법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교육부와 다수 시·도교육청은 현행 「학교급식법」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둘째, 개정안의 내용에는 다소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나, 유사한 입법례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과 달리 구체적 의무규정 대신 선언적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

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작업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장을 따른다.

제23조(작업환경관리조치) 제22조에 따라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분진작업을 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에 작업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당해 작업장을 적절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정 안전장구류를 지급 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

우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언급한 바 없어 구체적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

- 셋째, 개정안의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규정의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서 명시한 학교급식종사자의 범위에는 ‘조리실무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청별로 교육공무직원 중 학교급식 관련 직종의 명칭은 조례·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어 시·도에 따라 조리실무사, 조리원, 급식보조원 등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고 있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는 ‘조리실 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별다른 범위를 정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종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¹⁴⁾.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나,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학교급식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학교급식법령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학교급식법령 개정과는 관계없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조리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 조리종사자 적정배치 노력,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기구 확대, 조리방법 효율화, 종사자 역량강화, 업무 경감 등

14) 「참고자료1: 교육청별 교육공무직원 중 학교급식 관련 직종명칭」 참조.

○ 시·도교육청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신중검토

- 개정안 취지로 볼 때 급식종사자 안전에 대한 목적으로, 학생 식생활을 위한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음
- 일부 직종만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면 다른 근로자와 역차별 우려

[인천] : 일부수정

- 목적을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로 명확화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신중검토

-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조리사나 조리실무사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률 및 지자체조례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임
- 또한, 타 교육공무직종과 형평성 측면에서 교육 관련 법제 전반의 일관성과 정책의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대한영양사협회: 신중검토

- 개정안은 학생 건강과 교육급식의 본질을 훼손하고, 단위학교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과 의무를 전가할 것으로 우려됨

○ 한국식생활교육연대: 신중검토

- 조리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을 학교급식법에서 별도로 규율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충돌할 수 있음
- 급식 수요자(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근로자(조리종사자)의 요구가 달라 학교급식 정책의 방향성이 훼손될 수 있음..

2.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안 제7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u>기준</u> 등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u>및 인력 기준</u> 등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 업무를 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학교에 학교급식종사자를 둘 수 있다.</u> <u>⑥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⑦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및 조정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u>⑧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당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¹⁵⁾, 조리실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바 없음. 대신 조리실무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직종별 정원을 시·도별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¹⁶⁾에 따라 교육감 소속 인력관리위원회(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리실무사의 배치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지자체별로 1인당 식수인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 조리실무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⁷⁾. 또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등 사유로 병가, 연차, 특별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과도한 노동강도로 인한 퇴사인원 증가 및 신규 채용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음.

15)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참고자료2: 교육청별 교육공무직원 정원 등 관련 조례·규칙·규정 예시」 참조.

17)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인원 ‘전국이 제각각’」, 대한급식신문

「고강도 노동, 저임금 구조에…전국 학교 급식노동자 1748명 부족」, 경향신문

< 공립 조리실무사 결원 및 채용 현황 >

구분	결원현황(25.3.4.)					'25.3월 상반기 대비 정기채용* 현황			
	정원 (a)	현원(b+c)		결원 (d)= a-b-c	결원률 (d/a)	총 모집 인원수 (d)	채용 인원수 (e)	미달 인원 수 (f)=d-e	미달률 (f/d)
		교육 공무직 (b)	기간제, 대체 인력(c)						
서울	3,948	3479	445	24	0.6	542	84	458	84.5
부산	2,101	2031	70	0	0.0	261	219	42	16.1
대구	1,829	1809	20	0	0.0	158	158	0	0.0
인천	3,140	2757	383	0	0.0	477	318	159	33.3
광주	1,224	1224	0	0	0.0	276	225	51	18.5
대전	1,422	1366	56	0	0.0	237	231	6	2.5
울산	1,123	1083	40	0	0.0	183	79	104	56.8
세종	795	730	65	0	0.0	85	67	18	21.2
경기	11,815	11535	253	27**	0.0	1058	802	256	24.2
강원	1,524	1491	33	6	0.4	140	110	30	21.4
충북	1,816	1766	48	2	0.1	157	105	52	33.1
충남	2,615	2590	25	0	0.0	368	280	88	23.9
전북	2,117	2083	34*	0	0.0	221	195	26	11.8
전남	2,127	2080	27	20	0.9	185	174	11	5.9
경북	2,326	2270	56	0	0.0	186	166	20	10.8
경남	3,257	3171	86	0	0.0	198	163	35	17.7
제주	698	630	67	1	0.1	85	38	47	55.3
계	43,877	42,095	1,674	53	0.1	4,817	3,414	1,403	29.1

*정기채용 이후 수시채용 등을 통해 추가 채용하므로 실제 미달인원과 차이 有)

**급식실현대화공사중(휴업) 으로 채용 불필요

자료: 교육부

☐ 이에 개정안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이하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②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며, ③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의 기준을 두어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강제

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교육청과 학교가 인력 충원을 요구하거나 예산 편성 시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적정 식수 인원에 대한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다면 지
자체별로 조리종사자 배치 편차가 큰 상황¹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 시·도별 자치법규로 조리실무사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 및 학교 여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대통령령
으로 이를 일괄적으로 정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
려하지 못할 수 있고,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법규로 정원
등을 정하도록 한 여타 교육공무직 직종과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하고 조리실무사 등의 배치기준을 정하려는 취지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545호,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

18) 「참고자료3: 2025년 시·도별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예시」 참조.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교육부: 신중검토**

- 학교급식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자치법규(조례·규칙·정원 등) 및 지역·학교* 여건, 재정상황, 단체교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지방사무임을 고려할 때,
 - * 학교 규모, 식단형태 및 메뉴, 배식형태, 2~3식 제공 여부, 전처리 식재료 사용 비중, 조리기구 현대화 수준, 지역의 지원정책 등
- 교육부에서 획일적인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설정하여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어렵고, 지방교육자치권한 침해 우려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인력 충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반면, 중앙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인력 축소 불가피 우려
- 참고로,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해 시도별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공유하여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전북, 제주]: 신중검토

- 조리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등으로 정하는 상황에서 ‘1인당 적정식수 인원’을 법률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현장에 적절하지 않음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 조리실무사를 제외한 교육공무직원과 차별화로 다른 직종과의 반발 우려, 형평성 문제
- 현재 시도별 상황(지역 여건, 재정, 학교수, 학교여건, 학생수, 급식시설 등)이 각기 달라, 법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성 결여
- 교육감이 관리하는 교육공무직 인사 기준과 배치
- 급식종사자 1인당 식수기준 연구는 시도별 상황이 상이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하며, 연구 결과 기준을 상회하는 곳은 인력 감축해야하는 상황인데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

[세종, 경기]: 일부수정

(세종)

- 교육감의 적정 식수인원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공표의무’를 ‘점검하고, 공표가능’으로 수정

(경기)

- ‘학교급식종사자’를 ‘조리실 종사자’로 수정하고, 식수기준 마련시 인건비 교육부에서 지원필요, 배치기준 연구 시 시도별 여건 고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신중검토**

-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및 준수 의무는 급식 인력 배치 기준에 과도하게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표어에 불과할 수 있음

- 또한 행정적·재정적 상황이 지역 및 학교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이 우려되고,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임용권을 가진 교육감이 이를 점검·공표하도록 한 조항은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갈등과 책임 전가를 유발할 소지도 있으며, 실제 급식 품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한영양사협회: 신중검토 - 개정안은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수 기준 마련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학교급식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확대하고 있음
○ 한국식생활교육연대: 신중검토 - 조리종사자인 교육공무직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은 관련 법령과 노동조합 단체협약 등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교육감이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따라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력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책정하고 있음 - 교육공무직원의 명칭, 직종, 근로조건 등이 시·도교육청별 상이하므로 교육부 단위에서 교육공무직원 전체에 대한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함

문 의 처
02)6788-5184

참 고 1

교육청별 교육공무직원 중 학교급식 관련 직종명칭¹⁹⁾

시도	조례·규칙·규정명	직종명칭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규정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칙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원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영양사, 조리실무사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급식보조원
대전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영양사, 조리원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경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규정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 급식보조
전남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규칙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경북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영양사, 석식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19) 자료: 교육부

참 고 2

교육청별 교육공무직원 정원 등 관련 조례·규칙·규정 예시²⁰⁾

시도	조례·규칙·규정명	관련 규정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별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정원) ① 관리부서의 장, 본청 사업부서의 장 및 정원을 관리하는 직속기관의 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청 사업부서의 장과 정원을 관리하는 직속기관의 장은 사업의 신설 및 폐지, 운영부서의 정원 조정 요구 등으로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정원조정계획을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생략)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정원의 책정 및 관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규정	제5조(정원 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업무량 및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2.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3. 채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②·③ (생략) 제10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 ①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 및 정원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 및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총괄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예산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부서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각급기관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리부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근무를 위하여 무기계약 대상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인사, 복무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칙	제5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사업부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관리할 때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20) 자료: 교육부

시도	조례·규칙·규정명	관련 규정
		2. 인력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거나, 채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할 경우 ②·③ (생략) 제9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 ①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 및 정원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정원)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정원관리)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별표의 정원 책정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사용기관별·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제4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원책정과 관련한 사업계획 2. 공무원으로 대체되는 인력 3. 교육공무직원의 직무분석 결과 등 ② 사용기관의 장은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 제6조(정원의 책정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리총괄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원책정 요구를 받으면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책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칙 제4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4조(정수 책정 및 관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	제7조(정수관리의 일반원칙)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동 규정에서 정한 정수에 반영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근로자의 정수책정에 대하여는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4. (생략) 제11조(인력관리 심의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력관리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신규사업 등 필요한 경우 정수책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 직종의 채용권 전환에 관한 사항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4조(정원 책정 및 관리)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각급기관별·직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기준 및 채용 계획에 관한 사항 2.~5. (생략) ② (생략)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생략)

참 고 3

2025년 시·도별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예시²¹⁾

<서울>

- 조리사: 급식학교당 1명
- 조리실무사
 - 급식인원에 따른 배치

조리실무사 배치인원수	급식인원수		
	초등학교	중·각종중학교	고·각종고·특수학교
1	1~149	1~149	1~137
2	150~299	150~299	138~274
3	300~603	300~503	275~461
4	604~754	504~659	462~615
5	755~905	660~791	616~767
6	906~1,056	792~923	768~895
7	1,057~1,207	924~1,055	896~1,023
8	1,208~1,358	1,056~1,187	1,024~1,151
9	1,359~1,509	1,188~1,319	1,152~1,279
10	1,510~1,660	1,320~1,451	1,280~1,407
11	1,661~1,811	1,452~1,583	1,408~1,535
12	1,812~1,962	1,584~1,715	1,536~1,663
13	1,963~2,113	1,716~1,847	1,664~1,791

<인천>

- 조리실무사
 - 급식인원에 따른 배치

조리실무사 배치인원수	중식교(급식인원)			2식교	3식교
	특수학교	단설(유), 초등학교	중, 고, 각종학교	각급학교 (급식식수)	각급학교 (급식식수)
1명		30명 이하	30명 이하		
2명	~150명	31~180명	31~180명	200식이하	
3명	151~260명	181~330명	181~310명	201~450식	
4명	261~370명	331~480명	311~440명	451~660식	400식 이하
5명	371~480명	481~620명	441~560명	661~870식	401~500식
6명	481~590명	621~760명	561~680명	871~1,050식	501~600식
7명	591~700명	761~900명	681~800명	1,051~1,290식	601~700식
8명	701명이상	901~1,040명	801~920명	1,291~1,530식	701~800식
9명		1,041~1,180명	921~1,040명	1,531~1,770식	801~900식
10명		1,181~1,320명	1,041~1,160명	1,771~2,010식	901~1,000식
11명		1,321~1,460명	1,161~1,280명	2,011식이상	1,001~1,130식
12명		1,461명이상	1,281명이상		1,131식이상

21) 자료: 교육부

〈강원〉

○ 단설유 · 초등학교

급식 인원	50명 이하	51 ~ 160	161 ~ 280	281 ~ 385	386 ~ 515	516 ~ 655	656 ~ 800	801 ~ 950	951 ~ 1,100	1,101 ~ 1,250	1,251 ~ 1,400	1,401 명이상
배치 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50명당 1명추가

○ 중 · 고 · 특수학교

급식 인원	45명 이하	46 ~ 140	141 ~ 270	271 ~ 365	366 ~ 470	471 ~ 570	571 ~ 685	686 ~ 815	816 ~ 970	971 ~ 1,100	1,101 ~ 1,220	1,221 ~ 1,340	1,341 ~ 1,470	1,471명 이상
배치 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0명당 1명추가

〈전북〉

○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중식 기준)

(단위: 명)

구분	급식인원별 조리인력 배치 인원									
유, 초	40명 이하	41~ 120	121~ 255	256~ 390	391~ 525	526~ 660	661~ 795	796~ 930	931~ 1,065	1,066~ 1,200
	1(40)	2(80)	3(135)	4	5	6	7	8	9	10
중, 고	40명 이하	41~ 120	121~ 230	231~ 340	341~ 450	451~ 560	561~ 670	671~ 780	781~ 890	891~ 1,000
	1(40)	2(80)	3(110)	4	5	6	7	8	9	10

※ 배치기준 중 추가 배치 조건

구분	내용
2,3식 학교	조 · 석식을 실시하는 2, 3식 학교의 경우 배치기준 외에 2인 추가 배치 가능 (추가 배치된 인원내 대한 인건비(기본급, 각종수당 등) 재원은 모두 수익자부담 경비)
조리원 추가배치 (중복 적용 불가)	특수학교는 유 · 초 배치기준 외에 1인 추가배치 가능
	공동조리 본교 포함 3교 이상에 1인 추가배치 가능
	중식 기준 급식인원 1,200명 이상인 학교 1인 추가 배치 가능
	조리장과 식당의 층이 다르거나 인접해 있지 않은 2곳 이상의 장소에서 배식을 하는 학교 1인 추가 배치 가능(현장 확인 후 적용)

〈경북〉

□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적용일: 2025. 3. 1.)

직종	배치기준																				
영양교사 (영양사)	○ 조리실이 설치된 학교당 1명(단, 공동관리학교 제외) ▶ 일정규모 이상의 2~3식 제공 학교에 영양교사(영양사) 단계적 추가 배치																				
조리사	○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조리학교 1명(단, 분교는 제외) ○ 추가배치 ▶ 3식(조·석식 각각 50명 이상) 조리학교 또는 기숙사 설치학교이면서 조·석식 중 1식이 100명 이상이면 1명 추가																				
조리원	○ 기본책정 ▶ 공립단설유·초·중·고·특수학교: (중식)급식인원 기준 ○ 1식교·2식교																				
	<table><tr><td>급식 인원</td><td>41명~ 100명</td><td>101명~ 200명</td><td>201명~ 300명</td><td>301명~ 450명</td><td>451명~ 600명</td><td>601명~ 750명</td><td>751명~ 900명</td><td>901명~ 1,050명</td><td>1,051명 이상</td></tr><tr><td>배치기준 (명)</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d>150명 증가시 1명 증</td></tr></table>	급식 인원	41명~ 100명	101명~ 200명	201명~ 300명	301명~ 450명	451명~ 600명	601명~ 750명	751명~ 900명	901명~ 1,050명	1,051명 이상	배치기준 (명)	1	2	3	4	5	6	7	8	150명 증가시 1명 증
	급식 인원	41명~ 100명	101명~ 200명	201명~ 300명	301명~ 450명	451명~ 600명	601명~ 750명	751명~ 900명	901명~ 1,050명	1,051명 이상											
	배치기준 (명)	1	2	3	4	5	6	7	8	150명 증가시 1명 증											
	○ 3식교																				
<table><tr><td>급식 인원</td><td>41명~ 100명</td><td>101명~ 200명</td><td>201명~ 300명</td><td>301명~ 445명</td><td>446명~ 590명</td><td>591명~ 735명</td><td>736명~ 880명</td><td>881명~ 1,025명</td><td>1,026명 이상</td></tr><tr><td>배치기준 (명)</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d>145명 증가시 1명 증</td></tr></table>	급식 인원	41명~ 100명	101명~ 200명	201명~ 300명	301명~ 445명	446명~ 590명	591명~ 735명	736명~ 880명	881명~ 1,025명	1,026명 이상	배치기준 (명)	1	2	3	4	5	6	7	8	145명 증가시 1명 증	
급식 인원	41명~ 100명	101명~ 200명	201명~ 300명	301명~ 445명	446명~ 590명	591명~ 735명	736명~ 880명	881명~ 1,025명	1,026명 이상												
배치기준 (명)	1	2	3	4	5	6	7	8	145명 증가시 1명 증												
▶ 급식인원 산정(조정계수 적용) - 유치원·초등학교: 중식인원 × 95%로 산출된 인원을 위 급식인원에 적용 - 중·고·특수학교(1식교): 중식인원을 위 급식인원에 적용 - 2식교: 중식인원 + 석식인원을 위 급식인원에 적용 - 3식교: 조식 + 중식 + 석식인원을 위 급식인원에 적용 - 공동조리 배달(운반)급식 비조리교: 중식인원(급별 조정계수 적용 후) × 150%로 산출된 인원을 위 급식인원에 적용 ※ 조정계수 적용으로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절사 ※ 급식인원: 조리학교+공동급식학교이며, 급식을 하는 학생+교직원+유치원생 포함																					